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기간 미개정되어 현재의 항만운영 현실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현행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 기준을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항만별 물동량, 선박 입출항 척수, 하역장비·선박 가액·크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선에 대한 등록기준 신설 근거를 마련하며,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감정사업·검량사업 요금 신고 수리 등 업무 및 검수사 자격증 발급 관련 권한 위임 규정을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감정·검량사업 요금 신고 수리 등 권한 이관 (안 제27조제1항제5호)

감정·검량사업 관리청 이관(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 '23.6 법률 개정, '23.12 시행)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 관련 감정·검량 요금 신고 수리 등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나. 검수사 자격증 발급 주체 일원화 (안 제27조제1항제4호)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 발급 업무 체계화를 위해 검수사 자격증 발급 주체를 감정사·검량사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

다.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고기준 개정 (안 별표 1, 2, 5의2, 6 개정)

신규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기존업체의 유연한 영업 지원을 위해 규제 개혁위원회 개선권고(‘23.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기준을 현재의 항만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하며,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업체 규모화, 서비스 고도화 유도 및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역량 확보를 위해 일부 상향

라.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마련 (안 별표 6)

IMO(국제해사기구)의 탄소중립(∼‘50) 규제 강화에 따른 메탄올 병커링 수요 발생 본격화(‘24∼)에 따라 현재 등록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메탄올 선박 연료공급업에 대한 세부 등록기준(방충재 등)을 하위 행정규칙(항만 운송업무처리지침, 해수부 고시)에 신설하고자 법령(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검수사업자**”를 “**검수사업자·감정사업자·검량사업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단,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

3조제1항제2호(법 제26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6조의4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 제23조제1
항제3호(법 제26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6조의4제3호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에는 전단 경과규정을 적용하
지 않는다.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 (제4조 관련)

구 분	사업종류	일반하역사업			한정하역사업
	항만별	1급지(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2급지(대산항, 포항항, 마산항, 동해·묵호항, 목포항, 군산항)	3급지(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만)	
내 용					
1. 시설	시설평가액(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이 급지별 시설평가액 최소기준 금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5억원 이상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	일반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하되, 관리청은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2. 자본금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비 고

1. 관리청은 물동량(物動量) 감소, 항만 조건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지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별로 그 사정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3. 관리청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유하는 하역장비를 전용(專用)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중 그 전용하여 사용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하역장비의 확보를 유예할 수 있다.
4.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 중 급지별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가.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나.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가. 검수사업

구 분	1급지 (부산항)	2급지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3급지 (울산항, 대산항, 포항항, 마산항, 동해·묵호항, 목포항, 군산항)	4급지 (1급지부터 3 급지까지를 제외한 항만)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 검수사	24명 이상	12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나. 검량사업, 감정사업

구 분	검량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감정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 검량사 또는 감정사	검량사 4명 이상	감정사 4명 이상	검량사 또는 감정사 6 명 이상

비고

1.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2.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자격 보유자(동일인이 복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각각의 자격 보유자로서 중복 인정한다)를 기준으로 검량사와 감정사를 각각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4. 00. 00.>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11조의2 관련)

구 분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1. 필수 기준	가. 자본금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나. 노동력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수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검수사, 제3호에 따른 감정사 또는 제4호에 따른 검량사의 기준을 갖추는 것		
2. 기타 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 중 같은 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별표 6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 기준은 제외한다)을 함께 갖추는 것			

비고: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

가. 항만용역업

구 분	1급지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 택·당진항, 여수항)	2급지 (대산항, 포항항, 마산항, 군산항, 동 해·목호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만)
1. 자본금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 선박			
1) 제2조제1호가 목의 사업을 수 행하는 경우	통선: 10톤 이상	통선: 5톤 이상	통선: 5톤 이상
2) 제2조제1호라 목의 사업을 수 행하는 경우	급수선: 2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나. 선박연료공급업

구 분	1급지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항)	2급지 (대산항, 포항항, 마산항, 군산항, 동 해·목호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만)
1. 자본금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 1) 또는 2) 장비			
1) 연료공급선(연 료공급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100톤 이상	총톤수 40톤 이상	총톤수 20톤 이상
2) 연료공급차량 (유조차량의 경 우 「위험물안 전관리법」 제1 5조제1항 본문 에 따른 이동탱 크저장소를 말	탱크 용량 30 킬로리터 이상	탱크 용량 20 킬로리터 이상	탱크 용량 8킬로리터 이상

한다. 이하 같다)			
------------	--	--	--

다. 선박수리업

구 분	공 통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2. 공구창고 또는 공장 등	총면적 20㎡ 이상

라. 컨테이너수리업

구 분	1급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2급지 (1급지를 제외한 항만)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 작업장	총면적 35㎡ 이상	총면적 20㎡ 이상

마. 선용품공급업

구 분	공 통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비 고

1.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같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은 “출자금 “으로 본다.
2.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가.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등
 - 나.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
3. 항만용역업의 시설등의 기준 중 통선의 선령(船齡)은 목선(木船)의 경우에는 20년 이하여야 하며 강선(鋼船), 알루미늄선 및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에는 25년 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선박의 구조 및 환경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강선, 알루미늄선 및 FRP선에 대해서만 5년의 범위에서 그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
- 3의2.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중 통선 기준의 경우 각각의 통선은 여객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제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여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손해보험

4.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중 선박 기준의 경우에는 선박의 수와 관계없이 총톤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의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선 또는 급수선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선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료공급선의 총톤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연료공급차량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료공급차량의 탱크 용량을 합하여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5의2.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선 기준의 경우 각각의 연료공급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천연가스 또는 메탄올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선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만을 말한다)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료공급선의 선체 둘레에 방충재(防衝材)를 설치할 것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 또는 방제장비를 비치할 것

다. 연료공급선으로 인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전보(填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보험계약이나 그 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험자등과 체결할 것

5의3.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차량 기준의 경우 각각의 연료공급차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류의 방제조치와 화재 소화에 사용되는 장비(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장비는 제외한다) 등을 비치할 것

나. 연료공급차량으로 인한 유류오염과 항만 내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오염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제외한다)를 전보하는 보험계약이나 그 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체결할 것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사용되는 연료공급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갖추는 것

라. 그 밖에 항만의 안전, 항만운영의 장애 및 항만에서의 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 중 공구창고 또는 공장 등의 기준은 건축물의 동수와 관계

없이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기준 중 작업장 기준은 컨테이너 적재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건물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시설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어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나.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취항시킨 여객운송사업자가 자체 연료공급시설을 보유하고 해당 여객선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라. 부두에 설치된 연료공급시설 또는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접안된 선박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마. 항만 특성, 업종별 수급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항만에서 통선 또는 급수선의 사업 등록이 이루어지 않거나 과소하게 이루어져 원활한 항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바. 두 곳 이상의 항만이 인접해 있는 경우로서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된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권한 등의 위임 ·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 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 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 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 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 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 증의 발급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 사업자에 대한 운임 · 요금의 인가 · 변경인가 및 신고수리 · 변경신고수리, <u>검수사업자</u> 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 · 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 령 6. ~ 9. (생략) ② ~ ⑤ (생략)	제27조(권한 등의 위임 · 위탁) ①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 ----- ----- ----- <u>검수사업자 ·</u> <u>감정사업자 · 검량사업자</u> ----- ----- ----- -----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연 락 처	(044) 200 - 5774